

2 대통령령 작성례

- 기본 조
- ◇ 선택 조 ◎ 선택 항, 선택 호 / 선택 단어, 구, 절
- <> 생략할 수 있는 부분

• 대통령령 작성례는 현행 시행령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입법례를 기본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한 사례로, 반드시 작성례에 맞춰서 대통령령안을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제○조(목적) 이 영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목적) 시민의 삶과 도시환경에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중심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민족 문화와 세계문화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

적용범위

제○조(적용 범위)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한다.

예비허가

제◇조(예비허가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조제○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에 제○조제○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면 법 제○조 및 이 영 제○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장관/시·도지사가 예비허가를 할 당시 정식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했거나, 예비허가를 받은 후에 ★★장관/시·도지사(으)로부터 정식 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정식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예비허가신청이나 정식허가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공고, 허가 심사절차,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허가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등록기준

제○조(★★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조에 따른 일반★★업 또는 전문★★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를 갖추 것

2.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조제○항제○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각 목 생략)
3. 일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 것

과징금

제○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조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부과권자는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사람에게/과징금을 낸 자에게/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원을 말한다.

③ 법 제○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될 때에는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횡수는 ~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법 제○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담보 변경 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제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독촉

제○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않으면 부과권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독촉장을 발급할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일 이내로 한다.

연체금

제○조(연체금) ① 공단은 법 제○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합계는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체납한 경우(사업장 가입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연체금의 징수) ① 법 제○조에 따른 연체금은 연체된 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납기 초과일수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체금을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납된 기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따로 납부함으로써 그 미납된 개인부담금 및 연체금의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산금

제○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조제○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가산금 액수가 공단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가산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공유재산

제○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법 제○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무상 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위탁

제○조(용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장관은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용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조 및 제○조에 따른 용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따른 회계와 재산관리 등 용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이 회계의 재산의 매각·관리 및 그에 따른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용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설비기준

제○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조제○항에 따른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보공개청구

제○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조제○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위원회 - 설치

제○조(설치) …에 관하여 ★★장관/도지사/시장의 자문에 조연하게 하기 위하여 ★★장관/도지사/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 기능

제○조(기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심의·의결한다.

1.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고용 등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위원회 - 구성

제○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위원장
2.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 - 임기

제○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 신분

제○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않는다.

1.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둔다.]

5.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해촉사유 추가 가능)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 위원의 결격사유

제○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이하 다른 사유 추가)

위원회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 - 위원장

제○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 운영

제○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 소위원회

제○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 분과위원회

제○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개 이내의/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 간사

제○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부 소속 ~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 ③ 간사는 ~부 △△과장이 된다.

위원회 - 위원 수당

제○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

위원회 - 운영 세칙

제○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표

제○조(☆☆의 공표) ① **★★장관은/시·도지사는** 법 제○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② **★★장관은/시·도지사는** 법 제○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과태료 - 부과·징수절차

제○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조○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그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법령은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법령에 규정된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만, 그 법령에 없는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법령에서 정할 수 있음.

부칙 - 특례

제○조(오염방지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지하수의 오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제○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조제○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제○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조(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을 부과할 때 별표 1에 따른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 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 제1항은 특례이고, 제2항은 적용례에 해당함]

부칙 - 경과조치

제○조(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제○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조(기존의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른 ★★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업의 면허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종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적합하지 않은 영업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종별로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영업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로부터 ★★업허가나 ★★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 직제

제○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민방위·재난관리 집행기능이 ★★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부 소속 공무원 정원 중 310명(1급 1명, 2·3급 1명, 3·4급 1명, 4급 4명, 4·5급 7명, 5급 31명, 6급 34명, 7급 14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4명, 소방총감 또는 소방정감 1명, 소방정감 1명, 소방감 4명, 소방정 13명, 소방령 15명, 소방경 29명, 소방위 34명, 소방장 27명, 소방교 34명, 소방사 8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 4급상당 1명, 5급상당 4명, 6급상당 3명, 7급상당 2명)을 ★★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 서식 경과조치

제○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서식은 부칙 제○조제○호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항에 따른 서식을 제외한 서식 중 그 서식을 사용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경과조치

제○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투모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외투(육군장병 공용) 및 여군 일반외투(육군장병 공용)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 벌칙 경과조치

제○조(벌칙 적용 시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과태료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0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조제○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조제○항 및 제○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조 제○항제○호	000	000	000
나. 법 제○조제○항을 위반하여 법 제○조제○항에 따른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조 제○항제○호	000	000	000

별표 - 인가·허가·등록 기준

[별표 ○]

★★업의 등록기준(제○조 관련)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		시설·장비·사무실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